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 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 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기자재명	규격	수량(단위: 개)
------	----	-----------

빔 프로젝터 (beam projector) (스크린 포함)		1
소화기 (단면절개: 斷面切開)	3중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1
심폐소생술 (CPR) 실습용 마네킹		1